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 12. 30	규칙 제 851호
개정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4. 15	규칙 제1009호(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 9. 30	규칙 제1110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명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1. 융자기간은 8년 이하로 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용자이율은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광명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경우
2. 용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

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연재난 업무담당”을 “자연재난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㉚ 부터 ㉜ 까지 생략

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규칙 제1110호>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제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기금운용관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_____, 계좌번호(_____)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불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4호 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용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 치 기 간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5호 서식]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용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 치 기 간				이 자 수입액	비고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 치 기 간	이 율 (%)			담당자	출납원	담 당 과 장